

[별표 8]<개정 1999.3.18.>

어업의 종류별 관리선의 규모 (제27조제4항 관련)

어업의 종류	관리선의 규모
정치망어장 · 양식어장	총톤수 30톤미만
마을어장	총톤수 20톤미만
법률 제4252호, 수산업법개정법률 부칙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2종공동어장 및 제3종 공동어장	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별표6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종류와 어업의 명칭별 어선의 규모 범위 이내